

세제 적격 vs 세제 비적격 연금상품, 노후대비로 어떤 게 좋을까요?

Editor 박창영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Q 올해 40세인 A씨는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알아보던 중 연금상품은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무엇이 세제 적격이고, 세제 비적격 상품이며, 나에게 맞는 상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연금상품은 국민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은 연금상품 가입 후 돈을 납입하는 시점에 받느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세제 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된다. 간단하게 납입 당시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면 세제 적격 상품,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하면 된다.

세제 적격 상품,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5000원 돌려받아

세제 적격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등이 있는데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900만원, 합산해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한도 내 납입금액의 13.2%(지방세 포함, 이하 동), 초과하면 16.5%를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다. 연 900만원 납입의 경우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만 55세 이후 납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낸다. 세율은 연금수령자의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이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된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신중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상품, 운용수익 모두 비과세

세제 비적격 상품은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있는데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연금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과 같이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진 않는다. 대신, 납입금과 보험금 간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초과해 납입할 경우에도 종신형 연





세제 비적격 상품은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있는데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연금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과 같이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진 않는다. 대신, 납입금과
보험금 간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 형태로 수령(만 55세 이 후부터 사망 시까지 수령) 하는 조건이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연금보험은 중도해지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총 납입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비교하고, 환급금이 더 많으면 그 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 혜택 및 과세 방식에 있다.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

세제 적격 vs 세제 비적격 연금상품 비교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주요 상품	연금저축, IRP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대표적인 세제 혜택 (조건 충족 시)	매년 최대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중도해지 패널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16.5% 기타소득세 과세	납입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큰 경우 그 차익의 15.4% 이자소득세 과세
추천대상	직장인 등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정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을, 세액공제로 얻는 이익이 적거나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적격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M**